

1. 개정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추가로 정의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8.6.)
 - * 공통표준용어 338개, 공통표준단어 195개, 공통표준도메인 13개
 - *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 관리체계 등 규정

3. 주요내용

가. 금액, 번호, 코드, 명칭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197개, 누적 535개)

- (명칭) 건물명, 고객명, 기관명, 도로명, 법인명, 사업자명 등 76개
- (금액) 거래금액, 결제금액, 반환금액, 정산금액, 신청금액 등 35개
- (번호) 우편번호, 도로명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33개
- (코드) 가족관계코드, 국가코드, 도로명코드, 법정동코드 등 12개

나. 신규 생성된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를 업무단어와 형식단어로 구분하여 추가 (146개, 누적 341개)

다.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표준용어 정의에 필요한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 길이, 저장형식 등을 마련하여 추가(50개, 누적 63개)

4.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2.7.(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6, (메일) ks4838@korea.kr

○ 참고사항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957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육·해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및 해양환경 평가를 내실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방법 다양화 등의 최근 제기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제공(안 별표 3, 안 별표 5)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등의 의견수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행정기관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한 법 개정내용 반영(안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 개정('16.5.29) 내용을 반영
- 온실가스, 해양환경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별표 6)
 -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정량적 비교·평가 체계 강화
 - 해양환경의 해양 동·식물상, 수자원 이용 상황 등의 세부 항목을 어류 및 수산자원, 어업권 등 해역 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koorim@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을 검사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배터리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도 검사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만을 위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정비 신기술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